

서울특별시의회
제33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9.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115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5. 8. 11.
4. 회부일자 : 2025. 8. 14.

II. 제안이유

-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부가 상위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 [시행 2025.5.15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, 2025.5.15., 일괄개정] 등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, 법제처의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가 있어,
- 5년 이상 개정이 없던 장기 미정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선·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, 용어와 문구 등을 알맞게 수정하여 교육 수요자와 시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Ⅲ. 주요내용

1.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정합성 확보(안 제1조~제9조)
2.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(안 제10조~제37조)
3.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개정 사항 반영(안 제38조)
4. 법제처의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및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알맞게 수정(안 제39조~제44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규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2. 예산조치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3. 협의: 일괄개정 대상 조례 소관부서 협의 완료
4. 기 타
 -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 - 입법예고(2025. 7. 24. ~ 2025. 7. 30.) 결과: 의견 없음

※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‘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’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,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되, 기간을 10일 이내로 함

- 교육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- 성별영향평가: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
- 학생인권영향평가: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15호로 제출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 [시행 2025.5.15.][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, 2025.5.15., 일괄개정] 등 자치법규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명 개정사항 반영(안 제10조 ~ 안 제37조)에 대한 검토

- 동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(안 제10조 ~ 안 제37조)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(이하 ‘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’)」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「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」는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조례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‘서울특별시교육청’이 아니라 ‘서울특별시’, ‘서울특별시립학교(유치원)’, ‘서울특별시립도서관’ 등으로 되어 있는 조례 23건을 일괄적으로 ‘서울특별시교육청’으로 개정한 것입니다¹⁾.

[표-1] 「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」 개정 현황

구분	조례 제명 유형	사례수
1	• '서울특별시'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: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	18
2	• '서울특별시립학교'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: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	3
3	• '서울특별시립유치원'으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: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1
4	• '서울특별시립도서관'으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: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	2
5	•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누락된 조례 예시: 서울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	1

○ 그러나 당시 일괄 개정 조례는 조례 제명만 개정한 것으로 개별 조례 조문에 제명이 포함된 것은 개정되지 못하였는바, 금번 동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별 조례의 조항에 조례 제명이 포함된 경우 「조례 제명 일괄개정조례」에서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(안 제10조~제37조)

○ 이에 동 일괄개정조례안 안 제10조~제37조는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명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

나. 기타

○ 한편 안 제38조는 ‘학교보건진흥원’을 ‘보건안전진흥원’으로 조

1)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 등은 본안 소송이 나올때까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개정 대상에서 제외됨.

- 2024년 4월 26일: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」이 폐지
- 2024년 5월 16일: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
- 2024년 6월 25일: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
- 2024년 7월 11일: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
- 2024년 7월 23일: 대법원 집행정지를 인용

직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2023년 5월, 서울특별시의회 제 318회 임시회에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하여 기존 ‘학교보건진흥원’이 ‘보건안전진흥원’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인바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- 아울러 ‘안 제1조부터 안 제9조’는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명(안 제1조) 및 조항 번호(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5조) 개정과 인용 조문 오기 사항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8조)을 개정한 것이며, ‘안 제39조부터 안 제44조’는 어문 규정 등에 따라 오탈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인바,

이는 법령 상호 간 용어 및 조항을 통일시킴으로써 조례 내용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하겠습니다.

[표-2] 동 일괄개정조례안 개정 사유별 현황

조례제명 개정	상위법령 개정	기관명칭 변경	용어·문구 등 수정
31	18	1	12

- ☐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가영(2180-827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